

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회부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321호
- 나. 제 출 자 : 서울특별시장
- 다. 제안일자 : 2022년 10월 17일
- 라. 회부일자 : 2022년 10월 21일

2. 제안이유

- ‘서울특별시시민안전체험관’ 설치(직속기관)에 따른 정원 조정, 서울대공원 전문경력관 충원, 시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증원 등에 따라 서울시의 총 정원을 19,139명에서 19,167명으로 28명 증원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‘서울특별시시민안전체험관’ 설치에 따른 운영인력 직급 조정
 - (직속기관) 소방령 이하 △1 → 소방정 +1(안전체험관장)
 - ▶ 「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(대통령령)」 별표1에서 소방체험관장(시민안전체험관장)의 직급을 ‘소방정’ 으로 규정
- 나. 서울대공원의 사육운영직 퇴직 및 임기제 계약 만료 등에 따른 인력

충원을 위해 전문경력관으로 정원 조정

- (사업소) 5급 이하 △9 → 전문경력관 +9

다. 의회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지원 전문인력 증원

- (의회사무처) 5급 이하 +28

4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강상원)

가. 개정안의 개요

○ 개정안은 ‘서울특별시 시민안전체험관’ 설치에 따라 운영인력의 직급을 조정하고, 서울대공원 소속 사육운영직의 퇴직에 따른 전문경력관 정원을 인력증원 없이 상계조정 하며, 의회 의정활동과 지원을 위한 정책지원 전문인력 28명을 증원하고자 제출됨.

-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19,139명에서 19,167명으로 28명 증원됨.

< 정원 조정 내용 >

| 구분 | 총 정원 | 정무 | | | | | | | | | | 별정 | 연구 | 지도 | 소방 | 경찰 | 교육 |
|-----|-----------------|----|-----------------|----|------|----|------|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|-----|----|-------|----|-----|
| | | | 일반 | 1급 | 2·3급 | 3급 | 3·4급 | 4급 | 4·5급 | 5급이하 | 전문 경력관 | | | | | | |
| 현행 | 19,139 | 4 | 10,689 | 7 | 26 | 17 | 5 | 255 | 10 | 10,241 | 128 | 37 | 407 | 24 | 7,434 | 3 | 541 |
| 개편후 | 19,167 (+28) | 4 | 10,717 (+28) | 7 | 26 | 17 | 5 | 255 | 10 | 10,260 (+19) | 137 (+9) | 37 | 407 | 24 | 7,434 | 3 | 541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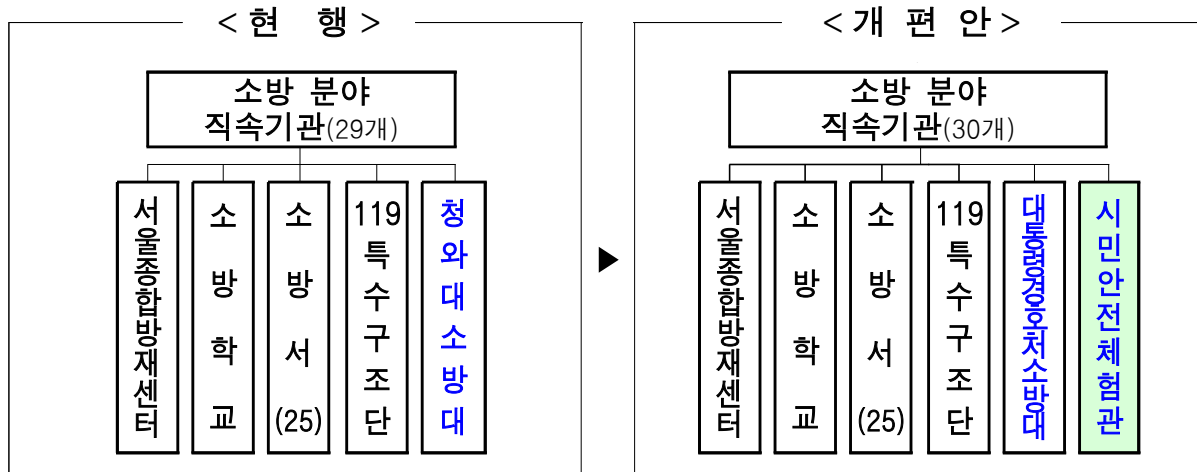
나. 분야별 인력증감에 대한 검토

(1) ‘서울특별시 시민안전체험관’ 설치에 따른 운영인력 직급 조정(소방령 이하 △1 → 소방정 +1)

- 최근 대시민 소방안전교육의 필요성과 책임성 강화를 목적으로 「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」이 개정되면서(2022.4.15. 시행) 소방체험관을 시·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됨.
 - 지방자치단체는 「지방자치법」¹⁾에 따라 조례로 소방기관, 교육훈련기관, 보건진료기관 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, 서울특별시(이하 ‘서울시’)는 현재 ‘서울시립대학교’, ‘소방서(25개 자치구)’ 등을 포함한 33개소를 직속기구로 운영하고 있음.
- 이에 따라 서울시는 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내 하부조직으로 운영중이던 광나루(2003.3.6. 개관)와 보라매(2010.5.25. 개관)체험센터의 통합적 관리·운영을 담당하는 시민안전체험관을 신설할 예정(2023.1.)임.
 - 센터는 화재나 지진, 태풍 등 각종 재난 상황을 가상으로 설정하여 일반시민들이 직접 체험하면서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설임.

1) 제126조(직속기관)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하면 대통령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자치경찰기관(제주특별자치도만 해당한다), 소방기관, 교육훈련기관, 보건진료기관, 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지도기관 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.

< 소방분야 직속기관 조직 개편(안) >



- 신설되는 소방체험관장의 직급은 「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」 별표 1에서 ‘소방정(4급 상당)’ 으로 규정하고 있어 상계조정을 통해 소방사(9급 상당) 1명을 줄이고 소방정 1명을 증원하게 됨(전체 정원 변동 없음).
- 최근 경주·포항지진,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, 이천 물류센터 화재, 이태원 압사 참사 등 대형 재해·재난사고들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다양한 사고상황에 대비한 안전체험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.
- 개정안은 안전체험관을 서울시 직속기구로 편제·신설하여 시민의 위기 대처 능력 함양 및 안전의식 제고와 함께 소방안전교육의 책임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.

(2) 서울대공원 전문경력관 정원 조정(사업소 5급 이하 △9 → 전문경력관 +9)

- 개정안은 서울대공원 사육운영직 등의 정원을 상계 조정해 동물사육²⁾ 분야의 전문경력관³⁾ 나급 1명, 다급 8명 등 총 9명의 인력을 확충하고 있음.
- ‘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’에 따라 관리운영직 1명, 임기제 8명의 결원 정원을 전문경력관 직종으로 상계 조정함으로써 전체 정원은 변동이 없음.

<서울대공원 전문경력관 정원 조정내역>

| 분야 | 대상 | 조정내역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동물사육 | 관리운영직(사육운영) 6급 1명 | 전문경력관 나급 1명 |
| | 임기제(농업) 8급 1명 임기제(농업) 9급 7명 | 전문경력관 다급 8명 |

※ 전문경력관 가군(5급 상당), 나군(6~7급 상당), 다군(8~9급 상당)

- 동물사육 분야는 동물전시·사육관리 등의 특수성으로 인해 보유 동물의 먹이·습성·생태 등의 실무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가 필요하므로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한 전문경력관 직위 지정은 타당함.

2) 동물사육 업무는 ① 관리운영직(사육운영), ② 임기제농업직(동식물관리요원), ③ 전문경력관(동물사육) ④ 일반농업직 4개 직군에서 수행 중임.

3) 전문경력관 : 일반직공무원 중 전문성이 요구되는 특수한 직무분야로써 순환보직이 곤란하거나 장기 재직 등이 필요한 경우에 계급 구분, 직군과 직렬 분류를 적용하지 않는 직위를 말함(「지방전문경력관 규정」).

- 서울시는 그동안 동물사육과 동물박제 분야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리운영직과 임기제 공무원의 퇴직인력을 전문경력관으로 대체하면서 매년 1~2회 정원을 상계 조정하고 있음.

<서울대공원 전문경력관 정원 조정 현황>

| 구분 | 2018 | 2019 | 2020 | 2021 | 2022. 4월 | 2022. 7월 |
|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|---|
| 조정인원 | 11 | 18(+7) | 23(+5) | 30(+7) | 34(+4) | 40(+6) |
| 조정내역 | - | 사육운영8급 △7명 → 나군 +1, 다군 +6 | 사육운영7급 △2명, 8급 △3명 → 다군 +5 | 사육운영7급 △3명, 임기제 △4명 → 나군 +4, 다군 +3 | 사육운영7급 △1명, 임기제 △3명 → 나군 +2, 다군 +2 | 사육운영6급 △1명, 사육운영7급 △1명, 임기제 △4명 → 나군 +4, 다군+2 |

※ 2018년 전문경력관 조정인원 11명은 전문경력관 나군 5명, 다군 6명 신규채용(2016.10월)에 따른 인원임.

- 이는 동물사육 분야의 우수 인력을 확보하고 고용안정성과 숙련 기술의 고도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이기는 하지만, 연도별 예정 퇴직 인력을 감안하여 정원조정 시 일괄 반영할 필요가 있음.

<서울대공원 전문경력관 정원 조정 향후 계획>

| 구분 | 2022. 11월 | 2023 | 2024 | 2025 | 2027 |
|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|--|-----------------------|
| 조정인원 | 49(+9) | 50(+1) | 58(+8) | 66(+8) | 67(+1) |
| 조정내역 | 사육운영6급 △1명, 임기제 △8명 → 나군 +1, 다군+8 | 사육운영6급 △1명 → 나군 +1 | 사육운영7급 △1명, 임기제 △7명 → 나군 +1, 다군 +7 | 사육운영6급 △3명, 임기제 △5명 → 나군 +3, 다군 +5 | 사육운영7급 △1명 → 나군 +1 |

(3) 의회사무처 정책지원 전문인력 증원(5급 이하 +28)

- 지방의회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의정활동 지원 전문인력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「지방자치법」이 32년만에 전부개정 되면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에 대한 근거 규정이 마련됨(2022.1.13. 시행).
- 지방의원 정수의 1/2 범위에서 조례로 정책지원 전문인력(정책지원관)을 둘 수 있도록 하고, 직급·직무 및 임용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규정함.

「지방자치법」

제41조(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) 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.

②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며, 직급·직무 및 임용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칙

제6조(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규모에 관한 특례)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두는 경우 그 규모는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4분의 1 범위에서,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연차적으로 도입한다.

-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는 의원 정수 1/2 범위에 해당하는 정책지원관 56명 중 2022년도 분(의원정수의 1/4) 28명을 채용하였으며(2022.8.), 나머지 2023년도 분 28명을 개정안에 신규로 반영하게 됨.

< 시의회사무처 정원조정 내역(안) >

(2022. 9월 현재)

| 구 분 | 계 | 일 반 직 | | | | | | | 임 기 제 | | | | | | | 관 리 운 영 | | | 전 만 정 책 관 | 별 정 직 | |
|-----|-------|-------|----|----|-------|----|----|----|-------|----|----|----|----|----|----|---------|----|----|-----------|-------|-------|
| | | 소계 | 4급 | 5급 | 6급 | 7급 | 8급 | 9급 | 소계 | 1급 | 4급 | 5급 | 6급 | 7급 | 8급 | 9급 | 소계 | 6급 | | | 7급 이하 |
| 조정전 | 401 | 209 | 6 | 30 | 67 | 78 | 26 | 2 | 158 | 1 | 13 | 21 | 74 | 41 | 7 | 1 | 21 | 2 | 19 | 4 | 9 |
| 조정후 | 429 | 209 | 6 | 30 | 95 | 78 | 26 | 2 | 158 | 1 | 13 | 21 | 74 | 41 | 7 | 1 | 21 | 2 | 19 | 4 | 9 |
| 증 감 | (+28) | | | | (+28)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
-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확충하는 것은 의회 인사권 독립 등 변화된 의정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임.
- 다만, 정책지원관의 신속한 추가 도입을 위해서는 부칙의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부터 수정할 필요가 있음(2023년 1월 1일 시행 → 공포시 시행).
- 또한, 개정안 [별표 4] 의 표 중 일반직 계란에 정원의 합계 상 오류가 있으므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(일반직 계 10,689명 → 10,717명).

<수정의견 조문대비표>

| | | | | | | |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|-----|------------|
| 개정안 | □ [별표 4] | | | | | | |
| | 구 분 | 계 | 분 칭 | 의회 사무처 | 직속 기관 | 사업소 | 합 의 계 행정기관 |
| | 총 계 | | 11,730 | | | | |
| | 정무직 계 | | 4 | | | | |
| | 시 장 | 1 | 1 | | | | |
| | 부시장 | 1 | 1 | | | | |
|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| 1 | | | | | 1 | |

| 구 분 | 계 | 본 청 | 의회 사무처 | 직속 기관 | 사업소 | 합 의 제 행정기관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|-------|-----|------------|
|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 | 1 | | | | | 1 |
| 일반직 계 | 10,689 | | | | | |
| 1급 | 7 | 6 | 1 | | | |
| 2·3급 | 26 | 21 | | 1 | 3 | 1 |
| 3급 | 17 | 8 | | 1 | 8 | |
| 3·4급 | 5 | 5 | | | | |
| 4급 | 255 | 152 | 19 | 8 | 68 | 8 |
| 4·5급 | 10 | 10 | | | | |
| 5급 이하 소계 | 10,260 | | | | | |
| 전문경력관 소계 | 137 | | | | | |

[별표 4]

| 구 분 | 계 | 본 청 | 의회 사무처 | 직속 기관 | 사업소 | 합 의 제 행정기관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|-------|-----|------------|
| 총 계 | 11,730 | | | | | |
| 정무직 계 | 4 | | | | | |
| 시 장 | 1 | 1 | | | | |
| 부시장 | 1 | 1 | | | | |
|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| 1 | | | | | 1 |
|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 | 1 | | | | | 1 |
| 일반직 계 | 10,717 | | | | | |
| 1급 | 7 | 6 | 1 | | | |
| 2·3급 | 26 | 21 | | 1 | 3 | 1 |
| 3급 | 17 | 8 | | 1 | 8 | |
| 3·4급 | 5 | 5 | | | | |
| 4급 | 255 | 152 | 19 | 8 | 68 | 8 |
| 4·5급 | 10 | 10 | | | | |
| 5급 이하 소계 | 10,260 | | | | | |
| 전문경력관 소계 | 137 | | | | | |

수정의견

| | |
|--------|--------------|
| 담당 조사관 | 연락처 |
| 김용우 | 02-2180-8062 |